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5)

관세청고시	제2007-17호(2007.06.04)
관세청고시	제2007-30호(2007.09.04)
관세청고시	제2009-58호(2009.08.20)
관세청고시	제2010-16호(2010.02.10)
관세청고시	제2010-69호(2010.06.10)
관세청고시	제2011-40호(2011.09.30)
관세청고시	제2014-85호(2014.07.08)

관세청고시 제2016-17호(2016.03.14) 관세청고시 제2017-07호(2017.02.01) 관세청고시 제2018-53호(2018.11.19) 관세청고시 제2019-44호(2019.10.11) 관세청고시 제2021-56호(2021.09.15) 관세청고시 제2021-74호(2021.12.28) 관세청고시 제2022-00호(2022.00.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서신"이란 「우편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 우편엽서, 항공 서가을 말한다.
- 2. "수입신고"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 3.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이하 "간이통관 신청절차"라 한다)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통관지세관장 (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 4.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하다.
- 가.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
- 나.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
- 5. "현장과세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 6.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이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 가. 현품,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우편물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 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 나.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
- 7. "현장면세통관"이란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없이 곧바로 면세로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 8.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이란 제16조제1항의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 가. 법 제94조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나. 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물품
- 9. "사전전자정보"란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와 「만국우편 협약 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이하 "만국우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물이 도착국가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으로 제공하는 세관신고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사전통관정보(Item attribute pre-advice: ITMATT): 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별표 1의 제1항 또는 제2항 정보
- 나. 사전발송정보(Pre-advice of despatch: PREDES): 개별 우편물이 들어 있는 우편 용기에 관한 전자적 발송정보로서 별표 1의 제3항 정보
- 10.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란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세관신고에 필요한 정보(우편물번호, 발송인 성명·주소, 수취인 성명·주소·전화 번호, 물품 품명·수량·가격 등)가 기재된 신고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세관표지(CN22)
- 나. 세관신고서(CN23)
- 다. 송장 및 세관신고서(CP72)
- 라. 그 밖에 만국우편연합에서 정한 세관신고서
- 11. "우편물번호"란 해당 우편물의 포장에 부착된 우편물의 고유번호 (특급우편물번호, 소포우편물번호 등)를 말한다.
- 12. "우편물목록"이란 법 제257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의 장(이하 "통관

- 우체국장"이라 한다)이 통관을 위해 접수된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의 종류·번호, 발송국가, 발송인 성명, 수취인 성명·주소·전화번호, 품명, 수량. 중량. 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 13. "심사대상 우편물"이란 과세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또는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우편물을 말한다.
- 14. "도착전신고"란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 15. "도착후신고"란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이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 16. "배송정보"란 우편관서가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한 정보로서 우편물번호, 수취인 성명, 수령인 성명, 수취인 주소, 배달일시 등을 말한다.
- 제3조(통관우체국)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통관 우체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제우편물류센터
 - 2. 부산국제우체국
 - 3. 인천해상교환국
- 제4조(통관지세관) ① 우편물의 통관지 세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항공으로 반입된 우편물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2. 해상으로 반입된 우편물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해상교환국에 도착한 우편물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 통관한다.

- 제5조(통관유형)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 1.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 2. 간이통관
 - 3. 현장과세통관
 - 4. 현장면세통관

제2장 우편물의 도착 및 사전전자정보 제출

- 제6조(우편물의 도착 및 접수) 수입하려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도착 및 접수되어야 한다.
- 제7조(사전전자정보의 제출)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 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사전전자정보의 활용) 세관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사전전자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 1. 우편물의 검사(검사대상 우편물 선별업무를 포함한다.)
 - 2. 우편물의 과세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심사대상 우편물 선별업무를 포함한다.)
 - 3. 그 밖에 우편물 통과 및 감시·단속 업무

제3장 우편물목록 제출 및 우편물 검사

- 제9조(우편물목록 제출) ①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우편물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따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8제5항 각 호에해당하는 사유로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우범우편물 선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우범우편물로 선별할 수 있다.
- 1.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 2. 발송인, 수취인, 출발지, 품명,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우편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선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검사대상 및 방법) ① 세관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통관 우체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법 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X-ray 검색기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X-Ray 검색기 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우편물이나 X-Ray 검색기 검사결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 등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통관우체국장은 세관장이 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6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④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사를 위하여 세관 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60조제2항에 따라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 제12조(우편물 분류 및 관리) ① 세관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종료한 때에는 우편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처리한다.
 - 1. 심사대상 우편물
 - 2.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 3.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계대상 우편물
 - 4. 마약류·위조화폐 등 범칙조사대상 우편물
 - ② 세관장은 제1항과 같이 분류한 우편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은 겉포장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리대상물품임을 표시하고 통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관리 하여야 한다.
 - 1. 마약류
 - 2. 총포·도검·석궁·화약류·전자충격기·모의총포 등 안보위해물품

- 3. 그 밖에 세관장이 통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안전한 통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관우체국장에게 해당 물품을 법 제166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등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
- 2.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3. 법 제237조에 따른 통관보류 물품
- 4. 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물품

제4장 심사대상 우편물

- 제13조(심사대상 통보·심사 등) ① 세관장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한 경우 그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한 경우 해당 심사대상 우편물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분류한 후 필요한 절차를 처리한다.
 - 1. 법 제237조에 따른 통관보류 대상 우편물
 - 2.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3.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 4.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
 - 5.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 제14조(통관안내)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관안내서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
 - 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 2. 제13조제2항제4호 우편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 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관안내서를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는 수취인에게 납부세액을 통지할 때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제15조(사전분류신청) ① 수취인 또는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에 우편물번호 등 우편물정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세관장에게 제12조제1항제1호의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되도록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해당 우편물을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대상은 우편물 겉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로 한정한다.

제5장 우편물 통관 제1절 수입신고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 5.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6.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 7.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
-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은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2의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17조(신고의 시기) ①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도착후신고를 한다. 다만, 우편물의 겉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경우 통관지 세관 관할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도착전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도착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 2.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 3.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 제18조(신고세관)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제4조에 따른 통관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 제19조(신고인)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한다. 다만,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
- 제20조(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 ① 신고인은 우편물의 수입신고 시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1. 신고구분: 도착전신고 또는 도착후신고
 - 2. 우편물번호
 - 3. 배송방법: 우체국배송 또는 수취인 방문 인수
 - ② 세관장은 우편물이 도착전신고된 때에는 해당 우편물번호를 통관 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통관우체국장은 도착전신고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면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에게 인계하고, 제9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도착전신고 우편물을 인계받으면, 통관 우체국장이 제출한 우편물목록과 수입신고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 ⑤ 세관장은 도착전신고를 수리 한 경우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물품배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편물번호 등 신고수리 내역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⑥ 세관장은 도착전신고된 우편물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날까지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우편물 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신고의 각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절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

- 제21조(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 세관장은 간이통관 신청 절차를 거친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 고지를 할 수 있다.
- 제22조(간이통관 신청) ① 세관장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과 간이통관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취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토요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m.customs.go.kr)
- 2.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 3. 직접 방문 제출
- 4. 팩스(Fax) 송부
- 5. 전자우편(e-Mail)
- 6. 등기우편 등
- 제23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시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란에 적용여부를 표시 하여야 한다.
 - ② 수취인은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FTA 관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FTA관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③ FTA협정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 제24조(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 세관장은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 한다. 다만, FTA협정관세 적용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다.

- 제25조(간이세율 적용 및 세액수납) ①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및 현장 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이하 "통관시스템"이라 한다)에 세액을 입력하여 통관 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③ 통관우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세액을 수취인으로 부터 수납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관세 등은 세관장세입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 제26조(예외적 수입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21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8호의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수취인이 제22조에 따른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우편물
 - 2. 세관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하였으나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한 우편물②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우편물의 수취인이 법 제241조제1항에따른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고지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이러한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이 통관 우체국으로 다시 반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현장면세통관

- 제27조(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세관장은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는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 없이 면세통관 할 수 있다.
- 제28조(예외적 수입신고) ① 수취인이 제27조에 따라 현장면세통관 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해당 우편물이 현장면세통관되어 통관 우체국에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수취인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보세운송 및 반송 등

제29조(보세운송)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 등의 운영인이

- 과세보류 상태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사용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 수취인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가 보세구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세관장이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을 승인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동 내역을 등록하고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 통관우체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되거나 보세운송 승인된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의 주소까지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 수취인 등이 해당 물품을 직접 보세운송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세운송 승인한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3의 과세보류물품 고무도장을 날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보세운송 우편물목록을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 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반입 또는 사용신고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30조(우편물 반송) ① 통관우체국장은 보관기일 경과, 수취인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반송 우편물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한 우편물번호가 기재된 우편물 중 일부 우편물만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만 구분하여 반송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장이 반송을 신청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우체국직원의 입회하에 해당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관세범칙 혐의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보류하고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반송을 승인한 경우 반송 우편물목록 1부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반송 승인 내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31조(폐기물품 관리) ① 통관우체국장은 부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그 목록을 세관장에게 통보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우편물의 폐기내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32조(우체국과의 연락 및 협조) ① 법 제258조제1항에 따라 통관 우체국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② 세관장은 우편물의 압수, 소유권 포기 물품의 취득,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통관우체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수취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우편물 배송정보를 통관우체국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세관장과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우편물 검사의 입회방법, 검사시간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 제33조(통관내역서 교부) ① 세관장은 제22조에 따라 수취인으로부터 간이통관 신청서를 받아 부과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별표 4의 세관검사필 날인 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②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받은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를 출력하여 수취인에게 우편물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 제34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또는 「상표법」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1.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에 품명, 가격, 수량, 발송인·수취인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2. 현품검사 결과 수입신고내역과 다른 경우
 - 3. 관세법 제234조 수출입금지 물품을 수입한 경우
 - 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
 - 5. 면세 또는 반입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물품을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
 - 6.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 하여야 한다.
- 제35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
 -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2.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 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 4.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
 -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6.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7.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8.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 9.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 **부 최**(관세청 고시 제2007-17호, 2007. 6. 4)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 및 제6-2조 규정과 제4장의 도착전 신고에 관한 규정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세칙을 폐지한다.
 - 1. 「관세법 제2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우체국 지정에 관한고시」
 - 2. 「국제수입우편물의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 제4절(제3-4-1조 내지 제3-4-4조)을 삭제한다.

부 최(관세청 고시 제2007-30호, 2007. 9. 4)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고시 제1-4조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사항(폐지)은 2007년 10.29부터 시행하며, 제3-5조 제4항 및 제4-4조 제1항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통관시스템 구축 및 직제가 개정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특히 폐지되는 통관우체국에 반입된 미통관 재감물품은 폐지 이후 동 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자체

처리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09-58호, 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10-16호, 201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10-69호, 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수 있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11-40호, 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수 있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14-85호, 2014.7.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6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있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16-17호, 2016.03.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최(관세청 고시 제2017-07호, 2017.02.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18-53호, 2018.1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19-44호, 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21-56호, 2021, 09,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사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21-74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22-00호, 2022.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우편물 사전전자정보(제2조제9호 관련)

① 과세대상이 아닌 우편물(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사전통관정보

- ① 발송인 성명(Consignor, name)
- ② 발송인 주소(Consignor, address)
- ③ 수취인 성명(Consignee, name)
- ④ 수취인 주소(Consignee, address)
- ⑤ 포장수량(Number of Packages)
- ⑥ 총중량(Total gross weight, including measure unit qualifier)
- ⑦ 물품설명(Brief cargo description) : 품명, 규격, 수량 등
- (8) 우편물번호(Identifier): 우편물번호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② 과세대상 우편물(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의 사전통관정보

- ① 우편물번호(Item No, UPU standard S10)
- ② 우편물종류(Mail Class): EMS, 소포(Parcel Post), 통상우편(Letter Post) 등
- ③ 물품구분(Category/nature of the item): 판매상품, 선물, 상품견본 등
 * Gift, Documents, Commercial sample, Returned goods, Sales of Goods, Other
- ④ 발송인 성명 (Sender's full name)
- ⑤ 발송인 주소, 우편번호(Sender's postal address)
- ⑥ 발송인 연락처(Sender's telephone, e-mail, fax):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등
- ⑦ 수취인 성명(Recipient full name)
- ⑧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Recipient postal address)
- ⑨ 수취인 연락처(Importer's telephone, e-mail, fax):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등
- ⑩ 우편물중량(Total item weight in kg)
- ① 우편요금(Postal charges)
- ② 물품설명(Description, quantity and unit of measure): 품명, 규격, 수량 등
- ③ 물품가격 및 통화단위(Value and currency)
- ④ 물품중량(Net weight in kg)
- ⑤ HS 6단위 부호(HS tariff number six digits):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번호
- ⑥ 원산지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 ※ ⑤∼⑥: 상업용 물품(상품, 해외직구 물품 등)이 아닌 경우 생략 가능

③ 서신을 제외한 모든 우편물의 사전발송정보

- ① 발송번호(Despatch-ID, UPU standard S8)
- ② 마감일시(despatch closed date time)
- ③ 우편자루 번호(Receptacle-ID, UPU standard S9)
- ④ 우편자루 일련번호(Receptacle-ID serial)
- ⑤ 우편물번호(Identified item, UPU standard S10)
- ⑥ 발송예정일시(Departure form origin)
- ⑦ 도착예정일시(Arrival at destination)
- ⑧ 발송국 공항 또는 항만(Origin Airport)
- ⑨ 운송수단(Planned Flight)
- ⑩ 도착국 공항 또는 항만(Destination Airport)
- ① 우편물중량(Receptacle weight)

[별표 2]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

수입신고대상물품 輸入申告對象物品

수취인 전화번호: 000-0000-0000

Articles Subject to
Customs Declaration

Phone Number: 000-0000-0000

7cm

10cm

[별표 3] 과세보류물품 고무도장

과세보류물품 (반입/사용신고 필요)

7cm

10cm

[별표 4] 세관검사필

세관검사필 근거: 관세법 제257조 일시: 20○○. . ○○세관

(전화: 000-0000)

(별지 제1호서식)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예시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기본형)

1. 귀하의 우편물은 세관 통관 또는 반송 절차가 필요하여 ○○○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본 아내서는 가이통과 또는 수입시고 대상 우편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방송하는 것이며, 이미 통과시청 된 경우 재시청 분필요)

통관번호	우편물번호	발송국	중량(g)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품 명	도착일자	

2. 우편물 보관기간(통관우체국 도착일부터 15일 이내, 45일 연장 가능) 내에 아래 통관방법에 따라 ○○○○세관에 통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보관기간 경과 시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방송 될 수 있음)

	① 간이통관 신청(5일 이내)		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 상 물 품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 ※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 상 물 품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판매용 물품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 (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간이통관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우편물
빵한하합	간이통관 신청서 제출(모바일·인터넷 등) 현장과세통관 대상 물품은 간이통관 신청 절차 없이 세관에서 즉시 부과고지 신청서 접수후 필요한 경우 세관 담 당자가 연락(2~3일 소요)	빵 한 하	① 관세사 선정(관세사 수수료 발생) ② 관세사에 수입신고 의뢰(송품장 등 관련서류 필요) ※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http://www.krcaa.or.kr) 참조

*(참고) 소액물품 면세(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물품) 기준을 초괴하는 경우 전체 물품(150불 포함)의 과세가격 기준으로 관세등 부과

[간이통관 신청서 제출 방법] (※해외로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은 간이통관 신청서로 반송 신청할 수 있음)

 모바일/ 인터넷
 ▶ (스마트폰)모바일 관세청(우촉여유코드로 간편접속)→ 우편물통관→개인인증→신청

 ▶ (PC)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업무지원→국제우편물통관→신청

 우편/FAX /E-Mail
 (Mašbů) 간이통관신청서(첨부양식)와 가격증빙자료(영수증, 송품장, 대금결제내역 등)를 아래 방법으로 제출 -(우편) ○○광역시 ○○구 ○○로 ○○번길 ○○○○세관 ○○○○과 -(F-Mail) ○○○○@korea.kr

- * (유의사항) 간이통관 신청은 통관 안내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야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간이통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 (**반송·폐기 신청 방법**) 간이통관 신청서의 "반송·폐기" 신청란에 체크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
- 3. 주요 물품 통관 안내 (※ 통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에관 홈페이지(http://○○○.go.kr) 참고

구분	통관가능(개인 자가사용물품)	통관제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수입신고)
건강기능 식품 · 의약품 등	자가사용 인정기준: 6병(의약품은 6병 초과시 3개월 복용 분량) - 6병 초과시 : 6병만 통관, 나머지는 반송 *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시 해당수량 통관가능 * 판매용 :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 수입신고	식품의약품인전체에서 수입금지 고시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유해성분 문의 : 식품의약품인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6병 이내라도 수입금지 유해성분 함유시 통관제한 (타다라필, 실데나필, HORNY GOAT WEED,요험빈 등)
모의총포 · 조준경	경찰청(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에 모의총포등 해당여부 ※ 모의총포는 수입이 금지되며, 총포류의 경우 지방경	

- *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은 권리권자등의 감정결과(진정상품 해당여부)에 따라 처리(별도 양식의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로 안내 됨)
- 4. 관련기관 연락처

= 71	3 31 FLOURIEL - 405	71.04	ED: 000 000 0000	오편물 이번 그레티 포 베티 4500 000
동관	고객시원센터: 125	검역	동물: 000-000-0000	[근처, 나고, Hu소] 우편고객만속센터: 1588-000
(세관)	우편세관: 000-000-0000	문의	식물: 000-000-0000	우편물 도착·보관·배송 (우체국) 통관우체국: 000-000-0000

※ 통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통관번호를 기재하여 이메일(으으으@korea.kr)로 문의하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장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1. 귀하의 우편물은 세관 통관, 반송 또는 폐기 절차가 필요하여 ○○○○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본 안내서는 간이통관 또는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발송하는 것이며, 이미 통관신청 된 경우 재신청 불필요)

통관번호	우편물번호	발송국	중량(g)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품 명	도착일자	

2.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관세법」 제235조에 의해 수출입할 수 없으며, 귀하의 우편물은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으로 판단되어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통관] 우편물 보관기간(통관우체국 도착일부터 15일 이내) 내에 ○○ ○에관에 통관신청 하지 않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처분 될 수 있으므로, 아래 우편물통관방법을 참고하여 기한내 통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① 침해부분 변경 후 반송 또는 폐기 신청	② 통관신청(진정상품일 경우)
■ 가짜상품일 경우 수입 통관불허	■ 진정상품일 경우 「간이통관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 하여
- 「간이통관신청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간이통관신청
반송·폐기 신청란에 체크하여 세관에 제출	* 판매용 물품은 관세사를 통해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함

* 가짜상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 통관방법]

	① 간이통관 신청(5일 이내)	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 상 물 품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 ※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 상 : 판매용 물품 : 한대	
빵 한 하 하	간이통관 신청서 제출(모바일·인터넷 등) ※ 현장과세통관 대상 물품은 간이통관 신청절차 없이 세관에서 즉시 부과고지 신청서 접수후 필요한 경우 세관 담당자가 연락(2~3일 소요)	변 (1) 관세사 선정(관세사 수수료 발생) (2) 관세사에 수입신고 의뢰(송품장 등 관련서류 (2) **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http://www.krcaa.or.kr	

[간이통관 신청서 제출 방법]

모바일/ 인터넷	▶ (스마트폰)모바일 관세청(우측대코드로 간편접속)→ 우편물통관→개인인증→신청 ▶ (PC)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업무지원→국제우편물통관→신청
우편/FAX /E-Mail	▶ (제출방법) 간이통관신청서(첨부양식)와 가격증빙자료(영수증, 송품장, 대금결제내역 등)를 아래 방법으로 제출 -(우편)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번길 ㅇㅇㅇㅇ세관 ㅇㅇㅇㅇ과 -(FAX) 000-000-0000, -(E-Mail) ㅇㅇㅇㅇ@korea.kr
절차를 (f) 간이통관 신청은 통관 안내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야 간이통관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간이통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 신청 방법) 간이통관 신청서의 "반송·폐기" 신청란에 체크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

3. 관련기관 연락처

(세관) 우편세관: 000-000-0000 (우체국) 통관우체국: 000-000-0	EH: 1588-1300 -000-0000
--	----------------------------

* 통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통관번호를 기재하여 이메일(<u>OOO@korea.kr</u>)로 문의하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장

(별지 제2호서식)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예시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우리세관에서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국제우편물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미리 세금을 부과하여 우편물 수령시 납부하도록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우편물에 대한 세금산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 7	귀하께서 반입하신 물 	품은 통관번호] 번으로, 과세가격 입니다.
※ (물程	귀하의 우편물 <u>물품가격0</u> 세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히 예 시 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 뚝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	이 미화 150달러를 : 하여 주시기 바랍니C 하인 경우) 면세	<u>천과</u> 하면 <u>전체 금액을 :</u> 사.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 등	금산정 방법			
-	금 = 과세가격 × 세율 과세가격 : 물품가격에 물품가격 : 우편물에 첨 세 율 : 관세, 부가:	우편요금, 보험료 부된 송품장상의 기	, -격 또는 우편물 신고서	d에 기재된 가격
*	주요물품의 간이세율표			
	품 명 모피제품 기타 일반물품	세 율 (%) 30 20	품 명 신발, 의류	세 율 (%) 25
*	관세가 무세인 일부 품목 우체국에서는 관련규정에 ₩0,000의 통관회부료를 추	의거 특급 및 소포	우편은 ₩0,000, 통상우	편(등기, 준등기)은
□총	납부하실 금액 = 세금	+ 통관회부료(₩0,0	00 또는 ₩0,000)	
□ 718	다 국제우편물 통관절차O	세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l: http://000.	go.kr, 🗗 00)00	0-000
		년 월	일	

○ ○ ○ ○ 세 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간이통관신청서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시	우 편 둘	를 간이	톳 관	신청시	Ь
----------------	-------	------	-----	-----	---

* 처리기간: 15일

(통관 문의: 고객지원센터 125, ㅇㅇ세관 000-000-0000, ㅇㅇㅇㅇ@korea.kr)

1. 등관대상 우편물

통관번호 (6자리)	중 량(g)			
우편물번호	수취인 성명			
신고품명	도착일자	년	월	일

2. 간이름관 신청 내용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작성·제출 시 보다 신속한 통관 가능)

우편물 내용 (품명·수량 등)	※ 상세히 기재
우편물가격 및 배송료	○ 물품가격: (화폐단위:) ※ 영수증 등 가격자료 제출시 신속한 처리 가능 ○ 물품가격에 운임(우편요금) 포함 여부(□ 미포함, □ 포함) ○ 전자상거래(인터넷) 구매 물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수취 사유	□ 개인구매 □ 선물 □ 재반입 □ 기타 (상세히 기재) ※ 해당사항에 체크(판매용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임)
수 취 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 연락처: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기재
반송 및 폐기 신청	◇ 반송폐기 신청 여부 (□예, □아니오) (신청사유 : 반입제한, 수취거절 등) ○ 반송(□ 전체, □ 부분), 폐기(□ 전체, □ 부분) ○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 폐기 □ 침해부분 변경 후 반송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 (□ 예, □ 아니오) □ 한-EU □ 한-HTA □ 한-미국 □ 한-아세안 □ 한-캐나다 □ 한-인도 □ 한 칠레 □ 한-페루 □ 한-터키 □ 한-중국 □ 한-영국 □ RCEP □ 기타() ※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구매체국가, 가격 정보가 기재된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금 납부 방법	□ 계좌이체 □ 신용카드납부 □ 수취시 현금납부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사이트 기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담당자에게 직접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입신고 대상은 관사	세관장 확인대상, 판매용, FTA협정관세 시후 적용 신청(예정), 간이통관 신청 기한 경과 등 배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않는 물품에 대해 시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합니다.
 「국제우편물 수	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에 따라 간이통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3. 신청인 (성명) (전화년	
	장 귀하

우편물목록

제출일자 : 제출일련번호 :

① 통관	② 우편물번호	③ 도착(반입)일자	④ 통관관리번호	⑤ 우편물종류	⑥ 총중량(g)	① 우편요금	⑧ 발송국가	⑨ 발송인명	10 우편물	통관 구분
우체국명	⑪ 수취인명	⑩ 수취인 주소	⑬ 우편번호	④ 수취인 연락처	⑤ 일련번호 (란번호)	⑩ 품명	⑪ 규격내용	18 19 중량 수량	②0물품가격	②]) 통화코드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보세운송 우편물목록

보세운송 우편물목록

연번	출발 일시	도 착 예정일시	우편물 목록번호	업 체 명	품 명	중량 (kg)	도착지 관할세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우편물 배송정보 목록

제출일자: 제출일련번호:

							12211			
① 우편물배달번호	② 우편물번호	③ 도착 세관	④ 도착일자	⑤ 배달 우체국	⑥ 배달일시	⑦ 배달종류 (우편물종류)	8 배송결과 (코드)	⑨ 수취인주소	⑩ 수취인명	⑪ 수령인명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

통관관리번호		우편물번호	우편물종류	Ť.
중량(g)	도착일자		통관우체국	명
합산과세여부	발송인명		발송국가	
수취인성명	수취인주소			
수취인연락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통관담당자명	

		중 량(g)	수 량	과세가격(원)	관세율(%)			
라번호	품 명	관 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0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부가가치세	세액합계			
1								
2								
3								
	납 부 총 액							

세관검사필 근거: 관세법 제257조 일시: 20 ○ ○, . ○ ○ 세관 (전화:000-0000)

(갑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2)
			중 량(g)	수 량	과세가격(원)	관세율(%)
란번호	품	명	관 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부가가치세	세액합계
		나	· 부 총 액	1		
		=	. 0 7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